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. 6. 15 선고 2016가단2675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5. 25.

판결 선고 2016. 6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경선

별지